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(김태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542 발의 년월일:2021년 08월 06일

발 의 자:김태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경만선, 김춘례, 노승재, 안광석. 오한아. 유 용.

이종환, 최영주, 황규복

의워(9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관광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관광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(안 제15조제2 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2 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3개월"을 "2개월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① (생 략)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	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~2. (현행과 같음)